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6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강선우 • 윤호중 • 한병도

한정애 · 임호선 · 윤준병

김영호 · 서미화 · 김 윤

김윤덕 · 강준현 · 허종식

허 영 · 서삼석 · 정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11제1항제2호 중 "장애인학대"를 "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장애아동에 대하여 행하여진 장애인학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학대"를 각각 "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의 설치 등) ①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	
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장애인학대</u> 예방 관련 연구	2. <u>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u>
및 실태조사	(장애아동에 대하여 행하여진
	장애인학대를 말한다. 이하
	<u>이 조에서 같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장애인학대</u> 예방 관련 교육	4. <u>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u>
및 홍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2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에 둔다.	

- 1. 2. (생 략)
- 3. <u>장애인학대</u>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4. ~ 6. (생략)
- ③ ~ ⑤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 3. <u>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u>--
 - ----
- 4. ~ 6.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